

#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1174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새활용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,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새활용 분야 산업을 육성하고자 「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」를 운영하고 있음
- 나. 새활용 분야의 전문성과 창업지원 사업 수행 경험, 기업·기관 간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수행의 효율성·전문성을 제고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시설 개요

- 시 설 명 :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 
※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 중 창업지원시설 기능 이관('23.1.1.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→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)
- 위 치 : 성동구 자동차시장길49(새활용플라자 2~4층)
- 규 모 : 1,700  $m^2$ , 지상2층 일부 및 3~4층  
※ 전체규모 : 16,530  $m^2$ , 지하2층, 지상5층
- 공간구성 : 입주공간(32개), 공용업무공간, 회의실 등

#### 나. 위탁내용

- 위탁사무명 :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
- 위탁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- 위탁사무
  -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
  - 입주기업 모집, 선발, 계약 등 관리 및 운영
  -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·운영
  - 창업지원을 위한 행사기획, 관리, 홍보 및 교류·협력사업
- 소요예산(안) : 1,271백만원 ('24년 기준)

#### 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-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및 제14조(관리·운영 지원)
 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및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6호
- 추진 필요성
  - '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' 운영은 새활용 분야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
  - 새활용 창업기업에 체계적·맞춤형·전문적 지원을 통해, 견실한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

#### 라.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3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법인,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4조(관리·운영 지원)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, 장비,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4년 민간위탁금 편성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 서지니 (☎2133-4883)